

보도 일시	2022. 12. 27.(화) 14:00 2022. 12. 28.(수) 조간	배포 일시	2022. 12. 27.(화)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 양현수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 이철호 (044-202-8904)
담당 부서	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 김초경 (044-202-7553)
		담당자	사무관 최충운 (044-202-7528)

‘지난 10월, 식품 혼합기 사망사고 관련’ 「①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 및 ②SPC그룹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」 발표

- 점검 사업장의 과반수(2,644개소, 54%)에서 위반사항 적발,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위반율 더 높아
* 법 위반율: 전체(53.9%), 50인 미만(51.8%), 50인 이상(57.3%)
- SPC계열사의 사업장 중 45개소(86.5%)*에서 산안법 위반 적발,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**도 다수 적발
* 산업안전보건법 위반: 277건(과태료 6.1억원, 26개소 사법조치)
** 근로기준법 등 위반: 116건(12억여원 체불, 2개소 사법조치)
- 자기규율 예방체계 현장작동가능성 확인
- 위험기계·기구 등 안전관리기준 현행화와 더불어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지난 10월,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식품 혼합기와 박스 포장기에 의한 연이은 기계 사고로 인명피해(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 사망, 1명 부상)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,

유사한 기계·기구에 의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사업장의 식품혼합기 등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에 대한 점검과 함께,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사 전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.

<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 결과>

우선, 식품혼합기와 유사한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 28종*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 동안을 ‘전국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 집중 단속기간’으로 설정하고,

* (현황) ▲안전인증 9종, ▲안전검사 13종, ▲자율안전확인신고 10종
▲제조업 사망사고 12대 기인물 12종 → 중복 위험기계 제외, 총 28종

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28종의 위험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, 펄프·제지업, 기계·금속 제조업 등 총 14만 개소에 대한 집중점검 계획을 공표했다.

이번 집중단속은 자율점검과 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면서 계도 하는 기간 3주와 이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불시감독 기간 3주로 분리하여 운영되었다.

계도기간에는 총 14만 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2,899개소에 대한 현장 지도를 통해 위험 기계에 대한 방호장치 불량 등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 1,494개소(51.5%)를 비롯하여 1,571개소에서 2,9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발견, 개선을 완료했고,

3주간의 계도기간 후 진행된 불시감독 기간에는 총 2,004개소에 대한 감독을 통해 1,073개소에서 총 2,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.

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중 263개소(13.1%)는 위험기계에서 477건의 안전 조치 미흡 사례를 확인했고, 특히,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, 혼합기 등 74대는 사용중지를 명령하였다.

계도기간 중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율점검과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 불시감독 기간에 적발된 163개소에 대해서는 대표(안전보건관리책임자) 등을 즉시 입건하고, 법 위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.

한편, 불시감독 과정에서 ①블로그 등 SNS를 통해 사내 아차사고를 수집, 전 직원이 소통하여 위험요소를 발굴·개선하거나, ②사업장 내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 출입정지하고, ③스스로 위험 기계·기구를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자기규율을 통한 개선사례도 발견되었다.

-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 사용하는 식품제조업, 펄프·제지업, 기계·금속 제조업 14만여 개소 중 위험도 재분류를 통해 4,903개소 **집중단속**
- (계도기간) 2,899개소 점검, 1,571개소·2,999건 법령위반
 - － 1,494개소(51.5%)·4,510건 안전조치 미흡 사례 확인
 - (감독기간) 2,004개소 감독, 1,073개소·2,184건 법령위반
 - － 263개소(13.1%)·477건 안전조치 미흡 사례 확인 → 74대 사용중지
 - － 자율개선 기간에도 개선하지 않은 163개소 대표 등 사법조치

총괄표	대상		법 위반 사항		후속 조치		
			사업장 수	위반 건수	시정조치 건수 (사업장 수)	과태료 건수 (사업장 수/백만원)	범죄인지 건수 (사업장 수)
계	계	4,903	2,644	5,183	4,517 (2,305)	1,581 (942 / 2,813)	454 (163)
	50인 미만	3,045	1,579	2,743	2,548 (1,458)	439 (282 / 714)	134 (52)
	50인 이상	1,858	1,065	2,440	1,969 (847)	1,142 (660 / 2,099)	320 (111)
①계도기간 (10.24.~11.13.)	소계	2,899	1,571	2,999	2,999 (1,571)	-	-
	50인 미만	2,360	1,246	2,129	2,129 (1,246)	-	-
	50인 이상	539	325	870	870 (325)	-	-
②감독기간 (11.14.~12.2.)	소계	2,004	1,073	2,184	1,518 (734)	1,581 (942 / 2,813)	454 (163)
	50인 미만	685	333	614	419 (212)	439 (282 / 714)	134 (52)
	50인 이상	1,319	740	1,570	1,099 (522)	1,142 (660 / 2,099)	320 (111)

<SPC그룹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>

한편, 식품 혼합기 사망사고 이후에도 다시, 부상 사고가 발생한 SPC 그룹에 대해, 엄중한 책임을 물어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18개 계열사 58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행했다.

<1. 산업안전 분야>

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, 6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,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,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하고, 26개소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할 예정이다.

이번 감독으로 ①‘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’와 ‘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(LOTO) 미조치’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, ②안전·보건관리자를 선임 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, ③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또는 심의·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, ④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, ⑤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례 등 SPC 내 다양한 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.

- SPC그룹 내 18개 계열사 58개소 대상 산업안전·근로기준 합동 **기획감독**
- (산업안전 분야)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 법 위반, 26개소 사법조치
 - (근로기준 분야) 15개 계열사 33개소 감독, 12억여 원 체불, 2개소 사법조치

계열사 수	대상 (부존재 포함)	법 위반사항		후속 조치		
		사업장 수	위반 건수	시정조치 건수 (사업장 수)	과태료 건수 (사업장 수/백만원)	사법조치 건수 (사업장 수)
12개	52 (62)	45	277	193 (38)	134 (39 / 615)	127 (26)

〈2. 근로기준 분야〉

계열사 중 제조공장이 있는 9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분야와 합동으로 감독했다. 정보통신 기술(IT), 서비스 등 6개 계열사는 근로기준 분야만을 감독하는 등 총 15개 계열사 3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.

감독결과, 총 12억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, 시정지시 101건, 과태료 부과 10건, 총 7,260만원, 즉시 사법처리 5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.

- * ▲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1,156백만원(29,929명), ▲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8백만원(154명),
▲ 상여금 46백만원(42명), ▲ 퇴직금 24백만원(157명) ▲ 기타수당 30백만원(84명)

주로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, 모성보호, 특별 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.

☑ 대표적인 위반 사례

- ①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을 쉬게 하거나, 또는 특정일로 대체하지 않으면서 근무토록 하였으나,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
- ② 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(10일)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,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장근로한도(주 6시간)를 초과하여 근무
- ③ 특별연장근로 인가자에 대해 건강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, 미인가자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

그 외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,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

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인사·노동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

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 이후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같이 위험기계·기구 관리기준의 현행화를 실시하고, 감독결과에 따른 행·사법 조치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히고,

기업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굴·개선해야 하며,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등 위험성평가 과정 전반에 노사가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,

정부는 ‘자기규율과 엄중책임’의 원칙하에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·사법적 조치의 원칙은 강화하되 자기규율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·점검하고, 기획감독 결과, 재해조사의견서 등을 적극 공유하여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고도화하며, 소규모·영세 사업장에 교육·컨설팅 등 현장지도가 더욱 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.

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

“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진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”라며서도,

“제도기간 중 과반수(51.5%)의 사업장이 위험기계·기구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였으나, 제도기간 후 불시감독에서는 미흡 사업장이 13.1%에 그친 것을 볼 때,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”라고 평가했다.

이어서 “앞으로는 노사 모두가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”라며

“정부는 출근에서 퇴근까지, 입직에서 퇴직까지,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강조했다.

- 붙임** 1. 전국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 집중단속 결과
2. SPC그룹 계열사 감독결과(산업안전 분야)
3. SPC그룹 계열사 감독결과(근로기준 분야)
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양현수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 주무관	이철호 (044-202-8904) 김정환 (044-202-8907) 남영우 (044-202-8908)
<공동>	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초경 (044-202-7553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최충운 (044-202-7528) 강송훈 (044-202-7531)



[첨부 1] 전국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 집중단속(10.24.~12.2.)

* ①자율점검·현장지도 중심 계도기간(10.24.~11.13. <3주>) → ②무관용 원칙 불시감독 기간(11.14.~12.2. <3주>)

- (총괄) 식품제조업 2,349개사, 펄프·제지업 301개사 등 총 4,903개사에 대해 현장점검 및 불시감독, 50인 이상 57.3% <50인 미만 51.9%> 위반
→ (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) 1,757개소 4,987건* 적발, 사용중지 74건
* ▲컨베이어 1,145건, ▲혼합기·배합기 951건, ▲지게차 885건, ▲식품가공용 기계 562건 등 (14쪽 참조)

- 후속 조치로 2,305개사 시정조치^{47.0%}, 163개사 사법조치^{3.3%}, 942개사에 과태료 28억여 원 부과^{19.2%}, 사용중지 74건 명령 등

총괄표	대상		법 위반 사항		후속 조치		
			사업장 수	위반 건수	시정조치 건수 (사업장 수)	과태료 건수 (사업장 수/백만원)	사법조치 건수 (사업장 수)
계	계	4,903	2,644	5,183	4,517(2,305)	1,581(942 / 2,813)	454(163)
	50인 미만	3,045	1,579	2,743	2,548(1,458)	439(282 / 714)	134(52)
	50인 이상	1,858	1,065	2,440	1,969(847)	1,142(660 / 2,099)	320(111)
①계도기간 (10.24.~11.13.)	소계	2,899	1,571	2,999	2,999(1,571)	-	-
	50인 미만	2,360	1,246	2,129	2,129(1,246)	-	-
	50인 이상	539	325	870	870(325)	-	-
②감독기간 (11.14.~12.2.)	소계	2,004	1,073	2,184	1,518(734)	1,581(942 / 2,813)	454(163)
	50인 미만	685	333	614	419(212)	439(282 / 714)	134(52)
	50인 이상	1,319	740	1,570	1,099(522)	1,142(660 / 2,099)	320(111)

업종별 분류	계	식품제조업	펄프·제지업	기타 제조업
계	4,903	2,349	301	2,253
①계도기간(10.24.~11.13.)	2,899	1,924	172	803
②감독기간(11.14.~12. 2.)	2,004	425	129	1,450

- ① 자율점검·현장지도 중심의 계도기간^{10.24.~11.13.}에는,
2,899개사 중 1,571개사^{54.2%}에 대해 시정조치(2,999건)
- ②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기간^{11.14.~12.2.}에는,
2,004개사 중 1,073개사^{53.5%}에서 법 위반확인 후, 163개사^{8.1%} 사법
조치, 과태료 28억원 부과(942개사, 47.0%), 사용중지 74건 명령*

* (사용중지 현황: 74건) ▲사출성형기 14대, ▲압력용기 13대, ▲컨베이어 9대, ▲크레인 8대, ▲산업용 로봇 8대,
▲프레스 7대, ▲혼합기 6대, ▲리프트 5대, ▲전단·절곡기 2대, ▲원심기 1대, ▲국소 배기장치 1대

□ 주요 법 위반사항

○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 중심(①계도+②감독)

- 현장점검과 불시감독을 통해 1,739개사에서 3,736건^{1개사당 2.1건의 법 위반} 확인 → 시정조치^{3,736건} 및 사용중지 명령^{74건}
- 대체로 미인증 기계·기구나 안전인증·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·기구를 사용하거나,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위험한 작업환경에 근로자가 노출된 것을 확인

기계·기구	①위반사업장 수 (비율)	②위반 건수 (비율)	위반사업장 대비 위반 건수(②÷①)	주요 위반사항
계	1,739개소*	3,736건	2.14건	
인증·검사	332개소 (19.1%)	625건 (16.7%)	1.88	▲미인증 기계·기구 사용 ▲안전인증·안전검사 기준 부적합 ▲자율안전확인 미신고 기계·기구 사용 ▲안전검사 미이행 기계·기구 사용 ▲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미부착 등
방호장치 기능유지	163개소 (9.4%)	240건 (6.4%)	1.47	▲방호장치 미설치 ▲방호장치 미작동·파손 등
방호장치 해체금지	136개소 (7.8%)	210건 (5.6%)	1.54	▲방호장치 해체 등
기기·기구 안전조치	759개소 (43.6%)	1,237건 (33.1%)	1.63	▲회전축 등 덮개 미설치 ▲후크 해지 장치 미설치·불량 ▲컨베이어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
동력차단장치	121개소 (7.0%)	162건 (4.3%)	1.34	▲동력차단장치 미설치 등
정비작업 안전조치	308개소 (17.7%)	353건 (9.4%)	1.15	▲정비 작업시 운전정지 미준수 ▲정비가 필요한 기계 사용 등
지게차	581개소 (33.4%)	772건 (20.7%)	1.33	▲전조등, 후진경보기, 후방감지장치 미설치 ▲안전띠 미착용 ▲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 미분리 등
보호구	123개소 (7.1%)	137건 (3.7%)	1.11	▲보호구(안전모, 보안경 등) 미지급·미착용 등

* (위반사업장 수 1,793개소) 중복사업장 수 제거 수치

○ **안전보건관리체제 중심**(②감독)

- 불시감독을 통해 **1,073개사**에서 **2,184건**의 **법 위반** 확인
- 이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과 관련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위반^{162건}, 산업재해 재발 방지와 관련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^{50건},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역할과 협력 관련 예방조치 위반^{44건} 등은 256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 대비 11.7%

안전보건체제 등	법 위반내용	위반 사업장수	위반 건수
		252	256
안전보건관리체제	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, 업무 소홀	15	15
	관리감독자 업무 소홀	65	65
	안전관리자 미선임, 업무 소홀	11	11
	보건관리자 미선임, 업무 소홀	8	8
	노사 협력		
	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	23	23
	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절차 미준수(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누락)	40	40
산업재해 재발 방지	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	50	50
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	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	2	2
	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(협업체 구성, 순회·합동 점검)	33	37
	발주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	2	2
	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미실시	3	3

-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은 곳도 63개소

□ **자기규율 노력(사례)**

- 소통 중심의 '쉬운 아차사고 관리'^①, 사업장 내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사고 잦은 곳에 '과속단속 카메라' 설치^②하여 차량의 속도를 관리하는 등 자기규율 활동도 일부에서 확인

- 특히 이번 '전국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 집중단속'의 운영방법*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점검과 개선 활동을 전인한 사례^③도 확인

* (운영방법) <1차, 3주> 10.24.~11.13. 자율점검·개선 유도를 위한 현장점검 → <2차, 3주> 11.14.~12.2. 불시감독 (홍보강화) <중앙>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사 동행 취재 → <지방> 지역 확산위한 보도자료 재배포

올해는 산업안전보건의 관심이 많은 해입니다.
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을 위해 근로자와 함께
잠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자 합니다. 근무하시다
위험하다 생각하는 부분과 아차사고 사건 등이
있으면 이 게시글의 답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찾아가
자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참여 바라며
자유롭게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댓글 2

가장 먼저 표정을 남겨주세요.

지게차 후미 경고등 불빛나는거 달아주면 좀더
안전한 작업이 될거 같습니다.

9월 15일 오후 5:09

확인했습니다. 빠른 시일내에
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



①소통 중심의 '쉬운 아차사고' 관리(강원)

②사업장 내 '과속카메라' 설치, 규정속도 유도(태백)

1. 대.내외 이슈

2. 노동부 불시 점검 대비 현장 안전개선사항(끼임)

활동 세부 내역	활동 실적 1	활동 실적 2
1. 배합기 안전 조치 긴급 정결 실시 . 2,3공장 배합기 안전 방호 조치 불합리 총 21건(세이프티 스위치, 인터락 스위치, 비상정지 스위치) . 1,2파트 선제적 점검 및 이상 조치 완료 2. 3파트 콘체 8ea 상부 안전망 설치 완료	 	
활동 효과	끼임 재해 관련 선제적 방호조치 및 작업자가 임의적으로 도어 오픈 시 설비 가동 정지화	

③계도중심
(10.24.~11.13.)
기간의
자율개선
(익산)

[첨부 2] SPC그룹 계열사 감독[산업안전 분야, 10.28.~11.25.]

□ (총괄) 12개 계열사의 총 52개소 중,

45개소^{86.5%}에서 27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확인

→ 자율안전확인 미신고 식품 혼합기 40대 등 총 44대 사용중지 명령*

* (사용중지 현황) ▲식품 혼합기 40대, ▲컨베이어 1대, ▲압력용기 2대, ▲리프트 1대

○ 후속 조치로 38개소^{73.1%}에 193건 시정 명령, 26개소^{50.0%} 사법조치, 39개소^{75.0%}에 과태료 6억 1,550만여 원 부과 등

감독결과 총괄		계열사명	감독 대상	법 위반현황		후속 조치		
				사업장 수	위반 건수	시정 건수 (사업장 수)	과태료 건수 (사업장 수/백만원)	사법조치 건수 (사업장 수)
총계		12개 계열사	52	45	277	193 (38)	134 (39/615)	127 (26)
산업안전 근로기준 합동감독	식품	소계	26	24	184	133 (22)	83 (23/463)	95 (17)
		A 기업	5	4	40	29 (4)	18 (4/102)	22 (3)
		B 기업	5	5	58	53 (5)	21 (4/164)	36 (4)
		C 기업	8	7	42	26 (7)	22 (7/59)	15 (4)
		D 기업	2	2	8	5 (1)	4 (2/77)	4 (1)
		E 기업	2	2	6	5 (2)	3 (2/6)	3 (2)
		F 기업	1	1	15	7 (1)	6 (1/29)	9 (1)
		G 기업	2	2	11	4 (1)	7 (2/23)	4 (1)
		H 기업	1	1	4	4 (1)	2 (1/1)	2 (1)
	원료	소계	1	1	18	17 (1)	8 (1/50)	10 (1)
		I 기업	1	1	18	17 (1)	8 (1/50)	10 (1)
산업안전 단독감독	유통	소계	25	20	75	43 (15)	43 (15/101)	22 (8)
		J 기업	21	16	55	35 (12)	28 (11/64)	21 (7)
		K 기업	2	2	8	6 (2)	5 (2/4)	-
		L 기업	2	2	12	2 (1)	10 (2/32)	1 (1)

- 한편 A기업 본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등 10건의 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2,600만 원 부과

A 기업	과태료		위반내용
	위반	금액(천원)	
합계	10건	26,000	
안전보건 관리체제	1	5,000	▲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
	1	3,000	▲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
	1	3,000	▲안전관리자 업무 미수행
	1	3,000	▲보건관리자 업무 미수행
	1	500	▲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미이행
안전보건 교육	1	1,000	▲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이행
	1	8,000	▲인화성 액체(알○○) 취급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이행
유해·위험 물질 조치	1	1,000	▲물질안전보건자료(S○○) 미게시
	1	500	▲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(세○○) 용기에 경고 표시 미이행
근로자 보건관리	1	1,000	▲휴게실의 목적 외 사용 등

□ 주요 법 위반사항

- (총괄) 전국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 집중단속 결과와 유사, 대부분 사소한 것임에도 언제든 사망사고로 연계되는 안전보건 조치^①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^{②~④} 등 총 277건의 법 위반사항 확인, 사용중지 명령 44건
- 총 277건의 법 위반사항 중 안전보건교육 미실시(37건, 13.4%), 기계·기구 위험예방 미조치(36건, 13.0%),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부적정(27건, 9.7%), 출입구·비상구 등 작업장 환경 미흡(21건, 7.6%) 순으로 많음

법 위반내용(총괄)	277건	비 고
① 안전보건조치	134	
1-1. 작업장 환경(출입구, 비상구 등)	21	
1-2. 작업장 통로(통로, 계단 난간 등)	11	
1-3. 개인 보호구 지급(안전모, 안전화 등)	2	
1-4. 관리감독자의 직무(안전인증, 작업계획서 등)	7	
1-5. 추락·붕괴 위험방지	13	
1-6. 기계·기구 위험예방	36	
1-7. 폭발·화재·누출 위험방지	10	
1-8. 전기위험 방지	14	
1-9. 관리대상 유해물질 건강장해 예방	2	
1-10. 소음 및 진동 건강장해 예방	1	
1-11. 밀폐공간 작업 건강장해 예방	12	
1-12. 근골격계부담작업 건강장해 예방	5	
② 현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	85	
2-1.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	27	
2-2. 안전보건교육(정기·특별교육, 직무교육 등)	37	
2-3. 유해·위험 방지조치(산업재해조사표,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)	16	
2-4. 도급시 산재 예방(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)	4	83건 / 1억 5,500만 원
2-5. 산업재해발생 원인 등 기록 보존	1	
③ 유해·위험 기계 및 물질 관리	28	
④ 근로자 보건관리(작업환경측정, 특수건강진단 등)	30	

○ (①안전보건조치) 전체 적으로 134건의 법 위반확인

- 특이한 것은 자율안전확인 미신고 식품 혼합기와 컨베이어, 안전 미인증 제품인 압력용기 사용^{4건 43대} 등* → 사용중지 44대

* (자율안전확인 미신고 기계 사용 → 41대 **사용중지**) ▲식품 혼합기 40대, ▲컨베이어 1대

(안전 미인증 제품 사용 → 2대 **사용중지**) ▲압력용기 2대 (방호장치 미설치 사용 → 1대 **사용중지**) ▲리프트 1대

- 폭발위험 장소를 설정하지 않고^{3건} 방폭 기계·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며^{2건}, 화재 감지·경보 장치도 설치하지 않음^{2건}
 - 또한 밀폐공간 작업을 하면서 인원 점검을 하지 않고^{1건}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으며^{1건},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긴급구조 훈련도 이행하지 않음^{1건}
- (②~④안전보건관리체제 등) 전체적으로 143건의 법 위반확인
- 특이한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^{5건},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^{5건}를 선임하지 않거나 설사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가 하면, 관리감독자^{6건}도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
 -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어도 심의·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^{7건},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곳^{2건},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곳^{1건}도 존재
 -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^{1건},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^{5건},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례^{총 4건<세부 83건>, 1억 5,500만원}도 확인

[첨부 3] SPC그룹 계열사 감독(근로기준 분야, 10.28.~12.10.)

□ 감독 개요

- (대상) SPC그룹 15개 계열사 33개소
- (범위) 노동 관계법 전반(연장근로한도 위반, 휴일, 연차유급휴가 등 중점)

□ **[감독결과 총괄]** 감독 대상 총 15개에서 위반사항 총 116건 적발
→ 범죄인지 5건, 과태료 부과 10건(7,260만원), 시정지시 101건

감독대상 (개소)	법 위반사항 (건)	체불 금액 (천원)	후속 조치		
			시정지시 (건)	과태료 건(만원)	사법처리 (건)
15	116	1,284,692	101	10(7,260)	5

□ 주요 법 위반사항

- ① **(임금체불)** 감독 대상 15개소 중 12개소에서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수당 등 총 1,285백만원 미지급
- ② **(모성보호 위반)** 총 6개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,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위반
- ③ **(근로시간 위반)** 총 8개소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 미실시하거나, 미인가자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 초과, 휴게시간 미부여 등
- ④ **(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)** 총 9개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 계약서,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* 미명시

* (근로계약서) 임금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 유급휴가 등
(임금명세서)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·지급방법, 소정근로시간, 휴일 등
- ⑤ **(비정규직 차별)** 총 2개사에서 특별휴가 등 복리후생, 각종 수당 등 지급에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 배제 → 시정지시
- ⑥ **(기타)**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(6개사), 취업규칙 법령 위반 또는 필수 기재사항 누락(8개사),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 운영 부적정(5개소), 법정서류 미보존(2개사) 등

감독결과 세부사항		주요 법위반 내용	조치사항
금품 체불	총계	▴ 12개소에서 30,366명, 1,285백만원 미지급	1개사 사법처리 * 그 외 시정지시
	연장·야간·휴일근 로수당	▴ 8개소에서 29,929명, 1,156백만원 미지급	
	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	▴ 6개소에서 154명, 28백만원 미지급	
	기타 수당	▴ 3개소에서 상여금, 각종 수당 등 126명, 76백만원 미지급	
	퇴직금	▴ 4개소에서 157명, 24백만원 미지급	
모성보호 위반		▴ 5개소에서 배우자 출산휴가(10일) 미부여 ▴ 2개소에서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(1 주 6시간) 초과	1개사 사법처리 4개사 과태료 부과 * 그 외 시정지시
근로시간 위반		▴ 8개사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미 실시 하거나, 미인가자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 ▴ 1개사에서 휴게시간 미부여	1개사 사법처리 * 그 외 시정지시
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		▴ 4개사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 계약서 상 임금 구성항목 등 필수기재 사항 미기재 ▴ 8개사에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 등 필수기재 사항 미기재	1개사 사법처리 4개사 과태료 부과
비정규직 차별		▴ 2개사에서 복리후생, 각종 수당 지급에 기간제 근로 자에 대한 차별	시정지시
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		▴ 6개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	2개사 과태료 부과 *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미실시 * 그 외 시정지시
기타		▴ 8개사에서 취업규칙 법령 위반 또는 필수 기재사항 누락 ▴ 5개사에서 노사협회의 미개최 등 운영 부적정 ▴ 2개사에서 법정구비서류 미보존	시정지시